

# 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4년 05월 17일까지 신고 바랍니다.  
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.

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담당자 : 김혜민 문의전화 : 055-570-4380

성명 생년월일	주소	지연 신고사항
박 *우 1968-12-15	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구룡로2길	무단전출

※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2항)

2024년 05월 17일

의령읍장

